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29
----------	-------

발의연월일 : 2025. 10. 31.

발 의 자 : 김성회 · 신정훈 · 박정현
윤건영 · 이광희 · 한병도
권칠승 · 이해식 · 채현일
양부남 · 이상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정하고 있고,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번지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한층 강화된 화재 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리튬이온전지는 진화가 극히 어려운 물질이므로 이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하고 리튬이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정보자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및 제40조제1항제14호 신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석탄 및 목탄”을 “석탄·목탄 및 리튬이온전지”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 ④ (생략) 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 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 라스틱류· <u>석탄 및 목탄</u>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 (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석탄·목탄 및 리튬</u> <u>이온전지</u> ----- ----- ----- -----.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의 안전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방 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 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 리를 하여야 한다. 1. ~ 13. (생략) <u><신 설></u> <u>14.</u> (생략) ② ~ ④ (생략)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의 안전관리) ① ----- ----- ----- ----- ----- ----- ----- -----. 1. ~ 13. (현행과 같음) <u>1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u> <u>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u> <u>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u> <u>15.</u> (현행 제14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